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7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임춘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최초 설치로부터 3년 이내(연장 필요시 최대 1회)만 존치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자치구 포함)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존치를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 공사와 출연기관의 경우 시민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빛과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더라도 존치기간이 만료 되면 이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서울시 공사와 출연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존치 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하여 매몰 비용의 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7조제5항에 각 호를 신설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기관·단체를 각 호에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 및 시 소속 자치구
2. 대한민국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지방공사와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④ (생략)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자치구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 및 시 소속 자치구 2. 대한민국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지방공사와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7조제5항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적용의 예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